

상담심리지도사 1급과 2급 자격검정 관련 Q&A

1. 회원학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회비 납부는 필수 규정입니다.
2. 학과 커리큘럼 중 타 학과 개설 과목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도 이수 과목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타 학과 과목 이수도 인정됩니다.
3.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가입 전 졸업생의 경우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 귀 학과에서 당해 연도(2025년)에 본 협의회에 가입하실 경우 당해 연도 졸업학기생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학과에서 취득한 과목이 인정됩니까?
☞ 인정됩니다. 편입 전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필수입니다.
5. 시간제 학점은행을 통해 일정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편입생의 경우는 자격취득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6.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이수과목 부족으로 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졸업 이후 시간제학점은행 또는 대학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이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 귀 학과에서 개설 중인 과목명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e-mail kacdem@hanmail.net로 문의하시면 자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알려드리겠습니다.
8. 이수했던 과목명과 성적증명서 상의 과목명이 다릅니다. 이수했던 과목명을 신청서에 표기 해도 되나요?
☞ 성적증명서 상의 과목명, 학점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검정과정에서 공적서류(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신청서를 대조합니다. 이 때, 상이한(다른) 내용이 있다면 '탈락'하게 됩니다.
9. 졸업학기에 이수 중인 과목을 포함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적증명서에 졸업학기 표기가 안 되는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주세요.
 - 1) 자격검정 신청 시, 신청서의 해당과목 비고란에 '이수중'으로 기입하고
 - 2) 현재 발급되는 성적증명서를 우선 제출한 후
(해당 과목의 이수중 여부는 학과에서 확인합니다.)
 - 3) 성적정정기간 만료 후 졸업학기의 이수내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추가제출합니다.

10. 자격심사신청서의 학점란에는 무엇을 기재합니까?

☞ A, B+ 과 같은 성적학점이 아닌 3학점, 2학점과 같은 이수학점을 적는 란입니다.

11. 복수전공자입니다. 신청서의 학과명에 어느 학과를 기재하나요?

☞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은 회원학과를 졸업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검정 서류를 접수받는 학과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상에 복수전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으나 검정위원회는, 학과 담당자가 확인 후 '신청서 상의 학과장 날인'란에 표기함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자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신청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격발급 기준 중, 졸업자 자격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탈락합니다. 또한 발급된 자격증은 폐기됩니다.

(단, 폐기될 자격증을 협의회로 돌려보내주신다면

다음 졸업시기에 자격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자격증 발급비는 10,000원입니다.) - 제20차부터 적용

→ 학과의 신청업무담당자는 신청명단에 추가할 때, 비고란에 이전 탈락회차를 꼭 적어주십시오.

13. 상담심리지도사의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까?

☞ 자격발급관련 서류는 해당 학과를 통해서만 일괄 접수받으며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e-mail kacdem@hanmail.net을 이용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